

국제동물명명규약

- 종(소)명의 구성 방법 -

백종철

순천대학교 농과대학 농생물학과

동물학의 발전에 따라 동물의 학명을 쓰는데 혼란을 방지하고자 국제동물명명규약의 제정을 시도한 것은 19세기가 끝날 무렵이었으며, 1905년에 유럽의 동물학자들은 국제동물명명규약인 "International Rules of Zoological Nomenclature"를 출판했다. 이 규약은 미비한 점을 크게 개정하여 1961년에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를 출간했다. 이 규약은 다시 수정하여 1964년에 제2판을, 1985년 2월에 제3판을, 현재는 1999년 12월에 국제동물명명심의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Zoological Nomenclature)에서 출간한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Fourth Edition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Union of Biological Sciences"에 따라 동물의 학명을 취급한다.

1. 동물의 명칭

동물의 명칭에는 통속명(通俗名, vernacular name)과 학명(學名, scientific name)이 있다. 학명은 세계공통의 이름으로 식물, 동물, 세균, 바이러스는 각각 그들의 국제명명규약이 있으며, 각 규약은 그 목적이 같지만 내용은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명명규약의 목적은 (가) 하나의 분류단위에는 단 하나의 유효한 학명을 사용하며, 이 학명은 다른 분류단위의 학명과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나) 이 학명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교신을 할 수 있다.

학명은 1999년에 간행한 국제동물명명규약 제4판에 자세한 규정이 있으며, 이 규약의 요점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동물학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가끔 우리나라의 학술잡지에서 학명에 대한 기초 사항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그 뜻을 잘못 이해하여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만 한다.

2. 국제동물명명규약

국제동물명명규약(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ICZN)은 동물학의 발전에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 번 개정하여, 현재에는 1999년 12월에 출간한 4판에 따라 동물의 학명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제4판(1999)은 제3판(1985)의 부록인 학명을 구성하는 방법인 희랍어나 라틴어 문법에 대한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새로운 학명을 만들 때는 제3판을 참고해

야 한다.

제7장 學名의 構成과 處理 [제25- 34조]

(VII. Formation and treatment of names. Articles. 23 - 23)

제25조. 학명의 구성과 처리 (Art. 25. Formation and treatment of nemes)

제26조. 학명을 다루기 위한 희랍어나 라틴어의 假定 (Art. 26. Assumption of Greek or Latin for treatment of nemes)

제29조. 科群名 (Art. 29. Family-group names)

제30조. 屬群名の 性 (Art. 30. Gender of genus-group names)

제31조. 種群名 (Art. 31. Species-group names)

近代人の 이름을 기초하여 만든 종군의 명칭(種群名)은 다음과 같은 2개 조항이 있으며, 부가한 조항과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a) 個人 이름에서 만든 종군의 명칭 (Species-group names formed from personal names)

(b) 性の 一致 (Agreement in gender)

제32조 본디에 쓴 철자 (Art. 32. Original spelling)

제33조 나중에 쓴 철자 (Art. 33. Subsequent spellings)

제34조 계급이나 조합의 변경에 따른 철자의 강제변경 (Art. 34. Mandatory changes in spelling consequent upon changes in rank or combination)

중(소)명의 구성법

동물의 중명의 구성이나 취급에 대한 사항은 ICZN (1999, 4rd ed.)의 조문 Chapter IV. Criteria of availability(Article 10-20), Chapter VII. Formation and treatment of names (Article 25-34), Chapter X. Species-group nominal taxa and their names(Article 45-49), 그리고 부록(제3판, 1985)을 참조하기 바라며, 제4장 적격(성)의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4장 適格의 規準 [제10 -20조]

(IV. Criteria of availability. Arts. 10 - 20)

출판한 새로운 이름이 모두 적격한 명칭(available name)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4장은 명명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1) 科群의 명칭(family-group names) - 어떤 屬의 학명어간을 기초한 複數主格名詞라야 한다. 한편 최초로 출판한 과군명의 접미어가 정확하지 않아도 적격한 명칭으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정정하여 사용한다 [예: Tipulariae Latreille, 1801는 Tipula를 기초로 구성한 科名이지만 현재는 Tipulidae Latreille, (1802)로 쓴다].

(2) 屬群의 명칭(genus-group names) - 속군의 명칭은 單數主格名詞를 사용한다.

만약에 라틴어의 속군명이 단수주격이 아니게 출판했더라도, 이외의 다른 조건을 만족하면 적격으로 인정되며, 다만 단수주격으로 정정하여 사용한다. [예: *Diplotoxae* Loew, 1863은 *Diplotoxa* Loew, 1863을 쓴다.]

- (3) 種群의 명칭(species-group names) - 종군명은 1자 이상의 단어 또는 복합어가 사용되며, 만약에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속명과 성이 일치하는 단수주격 형용사나 분사인 것
 - (나) 속명과 동격의 단수 주격의 명사인 것
 - (다) 소유격(속격) 명사인 것
 - (라) 명명하는 동물에 관련된 생물의 증명에서 유래한 소유격의 실명사(substantive)로 사용된 형용사인 것. <이하 생략>

학명이나 명명법의 행위가 적격하기 위해서는 규약 11조의 9개항을 만족시켜야 하며(Art. 11 Requiements), 특히 8항인 種群의 명칭(species-group names)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종군명은 1자 이상의 단어 또는 복합어를 사용하며, 만약에 라틴어에서 유래한 언어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 (1) 속명과 성이 일치하는 단수주격 형용사나 분사인 것
- (2) 속명과 동격의 단수주격의 명사인 것
- (3) 소유격(속격)인 명사인 것
- (4) 명명하는 동물에 관련한 생물의 증명에서 유래한 소유격의 실명사(substantive)로 사용한 형용사일 것.